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28호

「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9월 20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마을의 대표이자 지역 봉사자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·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자이며,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지만, 점차 평균연령이 높아가는 이·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 상해보험 가입 외에 종합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함. (안 제10조제3항제1호)
- 이·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함.

(안 제10조제3항제4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45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형 건강검진 지원
- 4.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의 면제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를 "시책참여차량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4. 다른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차량. 다만, 해당 신분증·증명서 등을 지닌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이나 인증서·표지 등을 붙인 차량에 한정한다.

②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「강릉시 리·통·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이·통장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기진작 등) ①・② (생	제10조(사기진작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이 · 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	③
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	
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	
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<u>1. 상해보험 가입</u>	1. 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형 건
	<u>강검진 지원</u>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
	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의 면
	<u>제</u>
<u>4</u> . (생 략)	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	:	
○ 성명	(단체	명) :
○ 주		소 :
\bigcirc α	₽L	⇒ì.

제ㆍ개정안 내용	의	견	비고